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416 발의연월일: 2022. 1. 14.

발 의 자:서일준·김승수·김용판

박 진・양금희・윤한홍

이 용・이주환・조명희

최형두 · 추경호 · 하영제

홍문표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,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(특례시)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・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려는 것임(안 제27조).

법률 제 호

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7조제1항 중 "해양수산부장관"을 "해양수산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)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특별법」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의 비용평가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3조(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,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·신고,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·신고, 그 밖

의 행위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명예관리원) ① 해양수산	제27조(명예관리원) ① 해양수산
<u>부장관</u> 은 무인도서의 효율적인	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
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 관리와	<u>· 군수 · 구청장</u>
관련된 법인·단체의 구성원,	
주변지역의 주민 등을 무인도서	
명예관리원(이하 "명예관리원"	
이라 한다)으로 위촉할 수 있다.	,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